



제437회국회(임시회)
제4차 법제사법위원회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노동조합의 회생절차개시 신청권한 부여 등〉
■ 김정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3060호)

2026. 7.

법 제 사 법 위 원 회
전문위원 이 세 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1. 개정안의 내용	3
2. 검토의견	7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김정호의원 등 10인
2. 발 의 일 : 2025. 9. 17.
3. 회 부 일 : 2025. 9. 1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, 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들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,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의 참여권 및 동의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상법」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

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4조, 제39조 및 제237조제2항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개정안의 내용

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「상법」 제374조제1항 각 호¹⁾의 행위 중 회사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「상법」 제517조제2호²⁾에 따른 해산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인수자모색절차³⁾를 진행하고, 그 내용을 근로자, 노동조합, 채권자 등에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「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김정호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213059)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,

인수자모색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

-
- 1) 「상법」 제374조(영업양도, 양수, 임대등)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.
1.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
 2.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·변경 또는 해약
 3.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제434조(정관변경의 특별결의)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- 2) 「상법」 제517조(해산사유)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.
2. 주주총회의 결의
- 제518조(해산의 결의)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.
- 3) 「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김정호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213059) 제517조의2(고용영향이 큰 회사의 해산 또는 영업양도에 관한 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(회사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수할 자를 찾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(이하 “**인수자모색절차**”라 한다)를 6개월 이상 진행한 뒤 제374조제1항에 따른 결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의 계속 중에는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위한 결의를 하지 못한다.

합(이하 “노동조합”이라 함) 등이 법원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34조), 이 경우 채무자인 회사는 신청 사실을 송달받은 때부터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안에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며(안 제39조),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37조).

현행	개정안
제34조(회생절차개시의 신청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. 1.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.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<u><신 설></u>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. 1.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.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.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	제34조(회생절차개시의 신청) ① 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채무자가 「상법」 제517조의2에 따른 고용영향이 큰 회사로서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(현행과 같음)

진 주주·지분권자

2.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

가.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

나. 합명회사·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

<신 설>

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·주주·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제39조(비용의 예납 등) 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

③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

2.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·지분권자

3. 채무자의 이사

4.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

5. 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

④ -----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--

-----.

제39조(비용의 예납 등) ① -----

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
납부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② ~ ④ (생략)

제237조(가결의 요건)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.

1. 희생채권자의 조

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
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
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
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

2. 희생담보권자의 조

가.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
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
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
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
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
자의 동의를 얻을 것

나.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
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
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
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
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
자의 동의가 있을 것

3. 주주·지분권자의 조

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

----- . 다만, 제34조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신청 사실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안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37조(가결의 요건) ① (현행 제
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개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·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<신 설>	② 제3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 외에도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(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)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--	--

2. 검토의견

개정안에 따라 노동조합 등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현행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사의 영업의 전부양도 및 해산절차 등이 회생절차 내에서 진행되고, 회사는 가결된 회생계획에 따라 해산 등을 하게 됨. 그리고 개정안은 노동조합 등에 회생절차개시 신청권 및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음.

구체적으로, 안 제34조는 「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김정호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213059)의 의결을 전제로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인수자모색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노동조합 등이

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법원은 위 신청에 대한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적 요건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개시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극적 요건으로 법 제42조4)에 따른 개시 기각 사유인 회생절차 비용 미납,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한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봄.⁵⁾ 적극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안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이 신설되는 경우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이고, 소극적 요건 중 회생절차 비용 미납과 관련해서는 안 제39조에서 채무자 회사가 상당한 기간 안에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. 그 밖에 소극적 요건과 관련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지는 법원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임.

이에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⁶⁾을 하면 현행법 제55조제1항제6호, 제216조 및 제275조⁷⁾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해산절차는 회생절차에 따

4)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2조(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2.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
3.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
5)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, 「회생사건실무(上)」 제6판, 2023, 148면.

6)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회생절차개시의 결정)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·월·일·시를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.

7)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5조(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)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라 진행되고, 채무자의 영업이 유지되는 합병·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닌 방식의 해산은 회생계획에 그 뜻과 해산의 시기를 정하여야 하는데, 안 제237조제2항은 회생계획안을 의결할 때에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는 규정을 두고 있음.

이를 종합하면, 개정안은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 등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인수자모집절차를 거쳐야 하고, 해당 사실을 노동조합 등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인수자모집절차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등에 회생절차 신청권 및 회생계획안 동의권을 부여하여 노동조합 등이 회사의 해산 결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의 갑작스러운 해산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상 피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
다만, 안 제34조제1항제3호로 신설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요건에 채무변제의 어려움, 파산 원인 상태 등의 내용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회생절차 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임.

5. 합병·분할·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

6.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

제216조(해산) 채무자가 합병·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과 해산의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.

제275조(해산에 관한 특례) ①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합병·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것을 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시기에 해산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즉, 안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회사라도 해산 등을 결정하면서 인수자모집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등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음. 그런데,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·주주·지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⁸⁾임. 이를 고려할 때 재정적 어려움과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노동조합 등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회생절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.

또한,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현행법 제56조⁹⁾에 따라 채무자 회사 재산의 관리·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(全屬)하게 되고,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법 제119조제4항¹⁰⁾에 따라 사용자인 채무자 회사와 근로자

8)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조(목적)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·주주·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,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·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9)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)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.

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.

10)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(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)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.

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응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③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유지되는바, 회생계획안에 대해 노동조합 등에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는지와 입법정책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.

문 의 처
02) 6788-5061